

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4월 2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세열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,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‘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’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교육인프라 인 대표 도서관의 절대 부족
 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는 21위에 불과
(마포중앙도서관 신축 경우에도 9위에 해당)
 - 우리구 제일 큰 구립서강도서관도 서울시의 작은 도서관 기준
1,650㎡에 미달하는 1,134㎡에 불과한 실정
- 공공교육시설 부족으로 우리구 청소년들의 교육욕구 미충족
 - 관내 시립청소년수련관 1개소,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 등으로
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인프라 절대 부족

- 2012년 타자치구로의 전출학생 규모는 상위 수준으로 25개구에서 초등생은 1위, 중등생은 3위로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출 증가
 - ※ 2012년도 초등생 전출 : 서울시 전체 651명 중 198명(30%)
- 우리구 소유부지에 시설비만 투입되므로 최소한 재원이 투입되며, 문화교육 단지화로 지역발전 활성화 예상
 - 구유지로 서울시에 임대 중이나 금년 6월말 임대기간 만료됨
 - 부지 반경 1.5km 내 13개 학교(초7, 중4, 고2)가 위치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시설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임
 - 부지내 건물(舊 의회)에 2013. 7. 1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, 장래 교육문화단지로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구비
- 시설건립 소요액 30%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한국중부발전(주)에서 지정 기탁한 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, 구 재정운용 부담이 경감됨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, 중요재산 취득·설치대상인 ‘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’를 구의회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주된 내용은 구(舊)마포구청사의 건물 중 본관 건물(지하1층, 지상5층, 연면적 7,207.2㎡)을 철거한 후, 동일 부지내에 ‘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’(지하2층, 지상6층, 연면적 15,814㎡)를 건립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교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표도서관을 확충하고, 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구민의 교육 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14. 3.21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재정투·융자심사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‘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’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,

심사결과, 1)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 강구, 2)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 곤란 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, 3)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 하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,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

- 총사업비가 40,376백만원(국비 5,335백만원, 시비 11,354백만원, 구비 10,687백만원, 발전소지원금 13,000백만원)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,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등 ‘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’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